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7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율 상향 (박상혁·이병진·강준현·이인선·이상식 의원안)	3

I. 개요

1.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18.
- (3) 회 부 일 : 2024. 10.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 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금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5%, 채권보상 60%(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70% 또는 80%) 및 대토보상 8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33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을 상향 (박상혁·이병진·강준현·이인선·이상식 의원안)

가.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상향 등

현행	개정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조) ○ 감면 대상 -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소득 · 공익사업 필요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 · 정비구역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 ·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감면율 <table><tr><th>구분</th><th>감면율</th></tr><tr><td>현금보상</td><td><u>10%</u></td></tr><tr><td>일반채권보상</td><td><u>15%</u></td></tr><tr><td>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u>30%</u></td></tr><tr><td>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u>40%</u></td></tr></table>	구분	감면율	현금보상	<u>10%</u>	일반채권보상	<u>15%</u>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30%</u>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40%</u>	☐ 감면을 상향 ○ (현행과 같음) ○ 감면율 상향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감면율</th></tr><tr><th>박상혁의원안</th><th>이병진의원안</th><th>강준현의원안</th></tr><tr><td>현금보상</td><td><u>50%</u></td><td><u>60%</u></td><td><u>20%</u></td></tr><tr><td>일반채권보상</td><td><u>55%</u></td><td><u>65%</u></td><td><u>25%</u></td></tr><tr><td>3년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u>65%</u></td><td><u>75%</u></td><td><u>40%</u></td></tr><tr><td>5년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u>75%</u></td><td><u>85%</u></td><td><u>50%</u></td></tr></table>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감면율</th></tr><tr><th>이인선의원안</th><th>이상식의원안</th></tr><tr><td>현금보상</td><td><u>80%</u></td><td><u>55%</u></td></tr><tr><td>일반채권보상</td><td><u>80%</u></td><td><u>60%</u></td></tr><tr><td>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u>80%</u></td><td><u>70%</u></td></tr><tr><td>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td><td><u>80%</u></td><td><u>80%</u></td></tr></table>	구분	감면율			박상혁의원안	이병진의원안	강준현의원안	현금보상	<u>50%</u>	<u>60%</u>	<u>20%</u>	일반채권보상	<u>55%</u>	<u>65%</u>	<u>25%</u>	3년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65%</u>	<u>75%</u>	<u>40%</u>	5년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75%</u>	<u>85%</u>	<u>50%</u>	구분	감면율		이인선의원안	이상식의원안	현금보상	<u>80%</u>	<u>55%</u>	일반채권보상	<u>80%</u>	<u>60%</u>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80%</u>	<u>70%</u>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80%</u>	<u>80%</u>
구분	감면율																																																		
현금보상	<u>10%</u>																																																		
일반채권보상	<u>15%</u>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30%</u>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40%</u>																																																		
구분	감면율																																																		
	박상혁의원안	이병진의원안	강준현의원안																																																
현금보상	<u>50%</u>	<u>60%</u>	<u>20%</u>																																																
일반채권보상	<u>55%</u>	<u>65%</u>	<u>25%</u>																																																
3년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65%</u>	<u>75%</u>	<u>40%</u>																																																
5년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75%</u>	<u>85%</u>	<u>50%</u>																																																
구분	감면율																																																		
	이인선의원안	이상식의원안																																																	
현금보상	<u>80%</u>	<u>55%</u>																																																	
일반채권보상	<u>80%</u>	<u>60%</u>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80%</u>	<u>70%</u>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u>80%</u>	<u>80%</u>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양도 시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까지</u> 양도 시 (강준현의원안) ○ 시행일: 2025. 1. 1.(박상혁·이병진 의원안) 공포 후 3개월 (강준현 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2)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대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하고 대토보상 받은 경우 ○ 양도소득세 감면을 또는 과세이연 - 양도소득세액의 <u>40%</u> 감면 또는 과세이연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 감면을 상향 - (현행과 같음) ○ 감면을 상향 - 양도소득세액의 <u>75%(박상혁의원안),</u> <u>80%(이병진·이인선의원안)</u> <u>85%(이상식의원안)</u> ○ 적용기한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박상혁의원안 2024. 8. 28. 발의(의안번호 3309), 이병진의원안 2024. 9. 10. 발의(의안번호 3873), 강준현의원안 2024. 9. 26. 발의(의안번호 4353), 이인선의원안 2024. 10. 10. 발의(의안번호 4629), 이상식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9)

☐ 5건의 개정안은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등을 수용·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을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비교]

구 분	현행	박상혁 의원안	이병진 의원안	강준현 의원안	이인선 의원안	이상식 의원안
현금보상	10%	50%	60%	20%	80%	55%
일반채권보상	15%	55%	65%	25%	80%	60%
3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30%	65%	75%	40%	80%	70%
5년 이상 만기보유 채권보상	40%	75%	85%	50%	80%	80%
대토보상	40%	75%	80%	40%	80%	85%

또한, 박상혁·이병진·이상식의원안에서는 채권만기 보유 특약 위반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수비율을 현행(3년 만기 15%, 5년 만기 25%)보다 5%p 하향하고 있으며, 이인선의원안은 환수조항을 삭제하고 있음.

그리고 강준현의원안에서는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¹⁾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²⁾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1) 다만,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음.

2) 양도소득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임.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은 양도대금의 현금보상 시 10%, 채권보상 시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0%임.

□ 그동안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는 몇 차례 개정된 바 있음.

동 조세특례는 1976년부터 시행되어 1989년까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1990년 현금보상 및 채권보상에 대해 차등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0년대에는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음.

2002년에는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현금보상분에 대한 감면을 폐지되고 채권보상분에 대하여만 10% 감면하였고, 2007년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전환으로 인해 현금보상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채권보상분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하였으며,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감면율을 인상하였음.

2014년 이후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이유로 감면율을 인하하였고, 2016년 이후 현행과 같이 현금보상에 대해 10%, 채권보상에 대해 15%, 3년 만기채권 보유 시 30%, 5년 만기채권 보유 시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변경 연혁]

구분	~1989	1990~1993	1994~1998	1999~2001	2002~2006	2007~2008	2009	2010~2013	2014~2015	2016~
현금 보상분	100%	50%	30%	25%	-	10%	20%	20%	15%	10%
채권 보상분	100%	80%	40%	35%	10%	15%	25%	25%	20%	15%
채권 만기 보유	-	-	-	-	-	20%	30%	40% (3년) 50% (5년)	30% (3년) 40% (5년)	30% (3년) 40% (5년)

□ 2022년 기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예정신고 기준 감면건수는 7만 9,480건, 감면액은 2,483억 8,400만원이고, 확정신고 기준 감면건수는 5,644건, 감면액은 67억 9,800만원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2016년	57,634	124,817	4,555	3,883
2017년	64,252	116,958	5,403	4,297
2018년	65,388	128,877	5,460	5,665
2019년	72,031	146,538	5,717	4,196
2020년	104,448	373,264	7,080	15,012
2021년	106,766	326,062	6,860	11,162
2022년	79,480	248,384	5,644	6,798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수용 시에 대토보상 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대토보상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액 40%를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고 있음³⁾.

다만,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 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대토보상권을 부동산전문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변경 연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율	불가	불가	불가	20%	15%	15%	40%
일몰기한	2009.12.31.	2012.12.31.	2015.12.31.	2015.12.31.	2018.12.31.	2021.12.31.	2026.12.31.

3) 참고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는 2007년 말 처음 도입 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만 가능하였으나, 2014년 말 세법 개정 시에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 혹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2015년 말 세법 개정 시 ‘양도소득세액의 15%의 감면 혹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9년 말 세법 개정 시 감면율을 40%로 인상하고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규정을 상향입법하였음.

2023년 기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은 181억원이며, 2022년 기준 과세이연을 받은 건수는 예정신고 기준 774건, 확정신고 기준 46건임.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감면액	88억원	158억원	234억원	181억원	138억원	114억원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공익사업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현황]

연도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예정신고 건수	확정신고 건수
2016년	122건	12건
2017년	69건	14건
2018년	75건	6건
2019년	76건	1건
2020년	210건	3건
2021년	546건	10건
2022년	774건	46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통해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공익사업용 토지등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후생손실 및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음.

즉, 비자발적 재산권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수용자의 재산권 침해를 세제혜택을 통해 일부 금전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토지소유자가 해당 수용자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가치 이외에 개인적 효용, 주관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협의취득·강제수용에 따른 토지등의 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보다 개인의 후생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음⁴⁾.

둘째, 협의 불성립 이후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에 행정비용·소송비용이 발생하고⁵⁾, 해당 공익사업의 지연 시 공익사업의 사업성과 시의성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보상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갈등 및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협의취득·강제 수용 시에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4)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완전한 보상(compensation)은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과 정확히 동일한 후생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의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때의 보상은 단순히 상실되는 자산소유권 그 자체의 가치를 초과할 수 있음(조세재정연구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5.9., p.330).

5) 공익사업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이가 불성립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는 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게 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의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에 대하여, 수용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차이는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양도와 수용의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⁶⁾.

둘째, 공익사업용 토지 등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세수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셋째, 동 과세특례는 그동안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율을 전반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상향할 경우 다른 감면특례에 대한 감면율 상향 요구 역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강준현의원안의 경우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에 일몰될 예정이므로 향후 심층평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거친 후 적용기한의 연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6) 헌법재판소, 2010헌바134, 2011.10.25.

나.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등

현 행	개정안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133조)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에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배제 · 과세기간별 16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1억원</u> 초과분(제1호) * 16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33조·제43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69조의2·제69조의3·제69조의4·제70조·제77조(현금보상, 채권보상)·제77조의2·제77조의3·제85조의10·조특법 개정법률 제6583호 부칙 제29조 · 5개 과세기간 농지대토 감면액(제70조)의 1억원 초과분(제2호가목) · 5개 과세기간 11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2억원</u> 초과분(제2호나목) * 11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69조의2·제69조의3·제69조의4·제70조·제77조(현금보상, 채권보상)·제77조의2	□ 종합한도 상향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계액에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배제 · 과세기간별 16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2억원</u>(강준현의원안) 또는 <u>3억원</u>(박상혁·이병진·이인선·이상식의원안) 초과분(제1호) · (현행과 같음) · 5개 과세기간 11개 조세특례* 감면 합계액의 <u>5억원</u> 초과분(제2호나목) ○ 시행일: 2025. 1. 1.

* 박상혁의원안 2024. 8. 28. 발의(의안번호 3309), 이병진의원안 2024. 9. 10. 발의(의안번호 3873), 강준현의원안 2024. 9. 26. 발의(의안번호 4353), 이인선의원안 2024. 10. 10. 발의(의안번호 4629), 이상식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9)

□ 5건의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강준현의원안)·3억원(박상혁·이병진·이인선·이상식의원안)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33조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자산이 아니라 인별로 계산하고, 과세기간별 감면한도와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제133조에 열거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는 감면한도가 없음.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

구 분	감면유형	과세기간 한도	5년간 합계액 한도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합계 1억원	1억원
제66조	영농조합 현물출자 감면		합계 2억원
제67조	영어조합 등 현물출자 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감면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감면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현금·일반채권)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3년·5년 만기 채권)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감면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X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감면		X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X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X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토지 등을 양도한 납세자가 연간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감면과 그 해 양도한 다른 감면을 합하여 계산함.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감면유형은 농지대토 감면, 수용감면, 대토보상 감면, 자경감면, 축사용지 감면 등이 있으며, 농지대토만의 감면한도는 5년간 1억원이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합하여 5년간 2억원임.

□ 개정안은 현재 1억원인 과세기간별 16개 조세특례의 감면 합계액 한도를 2억원 또는 3억원으로, 2억원인 11개의 5개 과세기간 조세특례의 감면 합계액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각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해 각 조세특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종합한도를 상향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 받는 조세특례 제도의 입법목적에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감면 종합한도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세회피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세기간별 한도로 인해 토지 등을 2개년에 걸쳐 분할매도하는 등의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한도를 상향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에 따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종합한도를 상향할 경우 일반적인 토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둘째,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대한 최근 3차례의 개정이 모두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⁷⁾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비과세 조세특례를 제한·폐지하는 추세와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7)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에 수용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만기보유특약 채권으로 보상받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2015년에는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2017년에는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최초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사실상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양도로 보아 종합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